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
제295회 임시회

**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**  
**【집행부발의】**  
**검토보고서**



2023. 3.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2023. 3. 15.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기획조정실)
- 제출일자: 2023. 3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3. 3.(금)
- 검토기간: 2023. 3. 3.(금) ~ 3. 9.(목)

### 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,
- 규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세부적인 규제심사 절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  -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⇒ 규제개혁 운영 조례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(안 제1조~제2조)
- 규제의 원칙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-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- 규제입증책임제 및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
-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7조~제11조)
  - 임명 또는 위촉대상 구체화
  - 위촉위원 임기 변경: 2년, 한 차례 연임 → 2년, 두 차례 연임
-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2조)
-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3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행정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3. 2. 1. ~ 2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 · 규칙심의회 결과(2023. 2. 28.): 원안가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, 행정규제기본법 제3항 제3호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명을 개정조례의 목적에 따라 ‘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’를 ‘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’로 변경하였음.

- 안 제1조는 규제시책 추진과 규제 정비를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, 안 제2조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적용 범위로 ‘지방자치법’에 따른 조례와 규칙으로 한정함.
- 안 제3조에서 규제의 원칙은 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, 안 제4조에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, 안 제5조는 신설·강화되는 중요규제에 대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기존규제 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·폐지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심사범위,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2조는 규제개혁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한 “규제신고센터”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“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”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포상 근거를 마련 하였음.
-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경기침체상황에서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·정비하고,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,
- 규제 신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,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규제개혁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·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연계성, 조례의 체계,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【 관 계 법령 】

### □ 행정규제기본법

제3조(적용 범위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·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규제 법정주의)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(上位法令)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· 총리령 · 부령 또는 조례 ·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전문적 ·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  
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

제5조(규제의 원칙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· 인권 ·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·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·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

제5조의2(우선허용 · 사후규제 원칙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(이하 “신기술 서비스 · 제품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·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

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
  2.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· 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
  3.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
  4.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 · 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 ·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【 현행 조례 】

#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5. 3. 24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
2. 규제의 신설 ·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 · 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· 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·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구의회 의원 4인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(관계전문가 포함)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7조(규제신고센터의 설치)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